◉ 법무부공고 제2016 - 5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급증에 따른 혼잡도를 완화하고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대폭 감경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증(전자사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 전자사증의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에 의한 각종 허가 신청 수수료 감경 (안 제74조 제2항)

온라인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재입국허가 신청 시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현재는 10분의 1을 감경)를 감경하도록 함

나. 전자사증 발급 권한의 위임 범위 구체화 (안 제78조 제7항)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권한 중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전화 : 02-2110-4116, FAX : 02-2110-0378)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 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